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

1. 신청요건

1)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(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 7년)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.

2) 신청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.

2. 제출서류

1) 대학원생의 사유서(자유양식)
2)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(자유양식)
3) 1항과 2항에 대한 증빙자료

3. 신청접수 :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

4. 심의 : 학기 중 신청받아 방학 중(1월 및 7월) 심의하여 다음학기 진입
(매학기 기간내(6월 30일, 12월 31일 이내) 신청자에 한하여 진행함)

5. 참고사항

1) 노동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,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**종합시험**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.

2) 노동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을 **매학기** 납부하여야 함.(**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)**

3)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**1회**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,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**2학기**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함.

4)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함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대학원행정실(02-3290-141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